

사회적기업 취약계층 고용비율 확인서 발급 안내

「국가계약법 시행령」 및 「기획재정부 계약예규」, 「지방계약법 시행령」 및 「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및 제30조에 따른 기업 및 조합의 취약계층 고용비율에 관한 고시」 및 행정안전부 회계제도과-3649(2018.07.27.)

“사회적경제기업의 수의계약 관련 취약계층 고용률 확인서 발급기준 안내”에 따라 사회적기업의 취약계층 고용비율 확인서를 아래와 같이 발급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.

□ 발급내용

- 취약계층 고용비율 산출기준

대상	· 취약계층 고용비율이 30%이상인 인증 사회적기업 , 사회적협동조합, 자활기업, 마을기업			
취약계층 고용비율	· (전체 취약계층근로자/전체 유급근로자) × 100			
근로자 인정기준	유급근로자 기준	· 고용형태와 상관없이 고용확인서 발급신청 시점에서 고용보험가입(상시고용) 일수가 180일 이상인 근로자 ※ 예) 발급신청(2022.10.01.)		
		구 분	고용보험 가입일	고용보험 가입 일수
		유급근로자 인정	2022.04.05.	180
		유급근로자 불인정	2022.04.06.	179
	취약계층 근로자	고용보험가입(상시고용) 일수가 180일 이상인 취약계층근로자		
	※ 취약계층 대상 : 저소득, 고령자, 장애인, 성매매피해자, 청년, 경력단절여성 중 고용촉진장려금 지급대상자, 북한이탈주민, 가정폭력 피해자,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, 결혼이민자, 갱생보호 대상자, 범죄구조피해자, 기타			
기타	· 전체 근로자수가 1명인 경우에도 취약계층인 경우 확인서 발급 가능			

- 취약계층의 범위 : 사회적기업육성법 시행령 제2조에 따름
- 취약계층의 판단기준 : 사회적기업 인증 업무지침 내 판단기준에 따름
- 확인서 유효기간 : 발급일로부터 180일
- 발급일(처리기간) : 신청일로부터 15일 이내
- 접수처: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(www.seis.or.kr) 온라인 접수 및 발급

○ 제출 서류

- 사업자등록증 사본
- 사회적기업 인증서 사본
- 개인정보 수집·이용 동의서(유급근로자 전체)
- 고용보험 사업장 취득자 명부
- 유급근로자 명부(온라인 작성)
- 취약계층 근로자 증빙 서류(취약계층 판단기준 참고)

○ 문의: 통합정보시스템(1661-4006), 관로지원팀(031-697-7863)